

야구배트 사용에 따른 징계세칙

대회에 참가하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대한야구협회에서 공인으로 지정된 야구배트 이외의 배트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제1조

- 가. 1차(한번)로 적발된 선수는 당해대회 출장 정지
- 나. 1차(한번)로 적발된 팀의 감독은 경고 조치한다

제2조

- 가. 2차(두번)로 적발된 선수는 당해대회를 포함한 3개 대회 출장 정지(동일선수)
- 나. 2차(두번)로 적발된 팀의 감독은 당해대회를 포함한 2개 대회 출장 정지

제3조

- 가. 3차(세번)로 적발된 선수는 적발일로부터 만 1년간 대회 출장 정지(동일선수)
- 나. 3차(세번)로 적발된 팀의 감독은 당해대회를 포함한 3개 대회 출장 정지

제4조

위 제1조, 제2조 및 제3조에서 당해년도에 적용하지 못한 잔여 징계 사항은 차기년도로 이월 적용한다.

제5조

부정배트를 사용한 선수는 공식야구규칙 6.06(d)항을 적용한다.[아마추어 관련 사항]

제6조

부정배트를 사용하여 적발된 선수는 그 즉시 야구장을 떠나야 한다.
사용된 부정배트는 대회본부에서 압수한다.(반환없음)

제7조

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에서 결정한다.